

발 간 등 록 번 호

11-1611000-002622-09



www.mltm.go.kr

2013년도부터

국토해양 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

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



국토해양부

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

목 차

1. 주택·토지

1-1. 감정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한 “감정평가기준” 명확화	3
1-2.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	5
1-3.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	7
1-4.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	9
1-5.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	11
1-6.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	13
1-7.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	15
1-8.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	17
1-9.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(http://nhf.mltm.go.kr) 서비스 개시	19
1-10.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	21
1-11.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	22
1-12.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	23
1-13.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	25
1-14.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	27

2. 건설·수자원정책

2-1.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	31
2-2.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	33
2-3.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	35
2-4.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신설	37
2-5. '13년 “수자원전문대학원” 개원, 이상기후대비 물 전문가 육성	39

3. 국토정책

3-1.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	43
3-2.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	45
3-3.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	47
3-4.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'새만금개발청' 신설	49
3-5.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	51
3-6.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	53
3-7.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	55
3-8.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	57
3-9. 건축심의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 단축	59
3-10. 도시미관을 창출하고,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	61

4. 교통정책

4-1.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	65
4-2.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	67
4-3.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(TPMS) 설치 의무화	69
4-4.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	71
4-5.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	73
4-6.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	75

5. 물류·항만

5-1.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	79
5-2.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	81
5-3.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	83
5-4.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	86
5-5.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	88
5-6. 과징금·벌금 병과제도 개선	89
5-7.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	91
5-8.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	93
5-9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	95
5-10. 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	97

6. 항공정책

6-1.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을 변경	101
6-2. 육상헬기장 갯길 설치 의무화 삭제	103
6-3.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	104
6-4.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.	106

7. 해양정책

7-1.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	111
7-2.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	113
7-3.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축소	115

[별첨] 달라지는 제도 산구 대비표	11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주택·토지

- 1-1. 감정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한 “감정평가기준” 명확화3
- 1-2.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5
- 1-3.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7
- 1-4.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9
- 1-5.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11
- 1-6. 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13
- 1-7.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15
- 1-8.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17
- 1-9.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(<http://nhf.mltm.go.kr>) 서비스 개시19
- 1-10.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21
- 1-11.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22
- 1-12.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23
- 1-13.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25
- 1-14. 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27

1-1. 감정평가의 투명성·객관성 제고를 위한 “감정평가기준” 명확화

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

▶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.

-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을 전부개정(국토해양부령, '13. 1. 1. 시행)하여,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, 누구나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격산정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- 「감정평가 실무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)을 제정('13.초)하여 감정평가의 방법·절차 및 윤리규정을 획기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

▶ 또한,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.

- 「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(국토해양부고시, '13. 1. 1. 시행)하여 공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업무량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산정되는 종량 방식이 일부 도입됩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)①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
②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

2013년도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추진 내용

- 추진배경 : 감정평가기준 객관화·투명화, 감정평가 업무 양과 수수료의 연계 등을 통해 감정평가의 품질을 개선하고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
 - 주요내용
 - ① 감정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(감정평가에 관한 규칙)
 - ② 목적별·물건별 감정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(감정평가 실무기준(안))*
 - ③ 공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(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)
 - 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- * 감정평가 실무기준(안)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('13년초 시행예정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감정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	○ 원칙·예외 불명확 및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등 절차규정 미비	○ 감정평가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 - 시장가치 기준평가, 현황평가, 개별평가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,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토록 규정 ○ 감정평가업자와 의뢰인의 분쟁을 최소화하 기 위해 확정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과 평 가조건 부가관련 규정 신설 ○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 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	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(’13.1.1.)
			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
② 목적별·물건별 구체적 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	○ 미 규정	○ 목적별(담보, 경매, 도시정비 등) 및 물건별 감정평가(부동산, 권리, 동산 등) 방법과 절차 구체화,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규정 명문화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 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	감정평가 실무기준 (’13. 초) *규제심사 중
			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
③ 공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	○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가제(100%)	○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 토지· 건물에 한해 종량제(30%) 및 종가제 (70%) 절충 도입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 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	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(’13.1.1.)
			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

1-2.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

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(☎ 044-201-3480)

- ▶ 2013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3개 지역에 확대 실시됩니다.
 -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, '일사천리'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 「일사편리」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게 됩니다.
 - 지금까지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건축물 대장,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.
 -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 - 또한,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, 금융, 창업, 건축, 경매,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,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·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|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

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

- 추진배경 :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
- 주요내용
 - 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
 - ②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
 - 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
- 시행일 : 2013. 8월 예정

※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	○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○ 2012년 3월부터 4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서비스 (의왕시, 김해시, 남원시, 장흥군)	○ 토지(임야)대장, 지적도(임야도), 건축물 대 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주택가격, 공시지 가,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○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 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*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 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	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(’13.8월 예정)
			지적기획과 (044-201-348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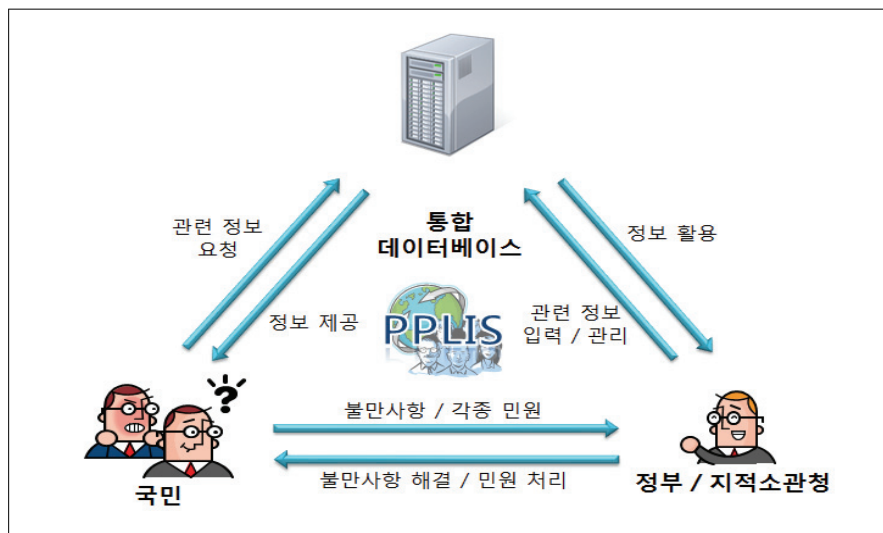
1-3.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

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(☎ 044-201-4651)

▣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공개 정보가 없었으나, 2013년도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과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 구축운영됩니다.
 -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사업지구 지정, 추진현황 경계결정 등 일련의 업무를 시스템화 하여 사업관리와 함께, 새로운 지적공부, 일필지조사서 등을 국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(PPLIS)을 도입하여,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,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 사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



〈PPLIS 운영계획 모델〉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
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

- 추진배경 :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관리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
- 주요내용
 - ①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
 - ②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 구축
- 시행일 : 2013. 9월 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☐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도입	○ 제도 없음	○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(PPLIS)을 도입하여,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,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요인 해소 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법령정보)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3. 9월)
			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획단 (044-201-4651)

1-4.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1)

▣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.5%p 내외로 인하하고,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.5%p 내려 '12.12.21부터 시행됩니다.

-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(현행 연4.0%),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(현행 연4.2%),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(현행 연5.2%)의 대출금리를 0.5%p 내외* 인하하였으며,

구 분		변경전	변경후	비 고
수 요 자	근로자서민 전세자금	4.0%	3.7%	〈우대금리 조정〉 - 다자녀(1.0→0.5%), 다문화· 장애인고령자 등(0.5→0.2%) (신규분부터 적용)
	근로자서민 구입자금	5.2%	4.3%	
	생애최초 구입자금	4.2%	3.8%	
사 업 자	공공분양 건설자금	5.0~6.0%	38~40%	민간사업자 4.8%(60㎡이하)
	공공임대 건설자금	3.0~4.0%	27~37%	민간사업자 2% 지원중('13년말)
	국민임대 건설자금	3.0%	2.7%	-

- 청약저축('주택청약종합저축' 포함)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.5%p씩 인하하였습니다.

구 분	가입기간 1년미만	1년이상 2년미만	2년이상
변경전	연 2.5%	3.5%	4.5%
변경후	연 2.0%	3.0%	4.0%

*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개정(12.21) *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

- 추진배경 :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시중금리 추세 반영
- 주요내용
 - ①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(현행 연 4.0%),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(현행 연 4.2%),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(연 5.2%) 등 대출금리 0.5%p 내외 인하
 - ②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 이자율 0.5%p 인하
- 시행일 : 2012.12.21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·서민 전세자금 : 연 4.0% ○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: 연 4.2% ○ 근로자·서민 주택구입자금 : 연 5.2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 : 연 3.7% 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연 3.8% ○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 : 연 4.3%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(’12.12.21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41)
② 청약저축 금리 인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입기간 1년 미만 : 연 2.5% ○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연 3.5% ○ 가입기간 2년 이상 : 연 4.5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입기간 1년 미만 : 연 2.0% ○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연 3.0% ○ 가입기간 2년 이상 : 연 4.0%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’12.12.21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41)

1-5.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1)

- 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·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·조정되어 '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.
-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,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,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,
 -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,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〈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〉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근로자 서민 전세자금	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*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 *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
근로자 서민 구입자금	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*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 *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
생애최초 구입자금	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	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5천5백만원 이하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|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

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

- 추진배경 : 실제 가구소득 반영 및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 해소
- 주요내용
- ①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·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·조정
- 시행일 : 2013.1월 시행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·서민 전세자금 :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) ○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○ 근로자·서민 주택구입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·서민전세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) 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5천5백만원 이하 ○ 근로자·서민주택구입자금 : 부부합산 연소득(상여금포함) 4천만원 이하 (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) <p>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 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</p>	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(’13.1월 시행예정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41)

1-6. 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3)

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.

- 현행 가점제*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나, 유주택자라도 소형·저가주택**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* 가점항목(84점) : 무주택기간(32), 부양가족수(35), 입주자저축 가입기간(17)

** 무주택 인정기준 : 전용60㎡이하+공시가격 5천만원이하+ 10년이상 보유

-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'7천만원 이하'로 상향하고, '10년이상 보유' 요건은 폐지하였습니다.

☐ 이는 2007년에 정한 무주택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, 주거상향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취지입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

☐ 추진배경 : 소형·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현실화

☐ 주요내용

-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·저가주택의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
 - (주택공시가격) 5천만원이하 → 7천만원이하, (보유요건) 10년이상 보유 → 폐지
 - (전용면적) 60㎡이하 → 존치

☐ 시행일 : 2013.1월 시행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소형·저가 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	○ 무주택 인정 소형·저가 주택 기준 - 전용면적 60㎡ 이하+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+ 10년 이상 보유	○ 무주택 인정 소형·저가 주택 기준 - 전용면적 60㎡ 이하 +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 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2013.1월 시행예정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43)

1-7.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3)

▶ 주택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.

○ 지금까지는 착오기재*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,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제재**를 부과해 왔으나,

* 착오기재 사례: 청약순위, 주택소유여부,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, 재당첨제한 등

○ 착오기재의 고의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, 당첨취소 외에도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과도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
▶ 앞으로는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부적격 당첨된 경우, 본인의 소명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취소와 일정기간 청약제한만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하였습니다.

* 당첨은 취소하되, 당첨사실을 삭제하고,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, 다만, 일정기간 청약제한(당첨일로부터 1년(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)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

추진배경 : 착오기재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청약 제한 완화

주요내용

-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
- 착오기재의 고의·과실여부 등의 판단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청약제한

시행일 : 2013.1월 시행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	○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	○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'당 첨취소, 청약통장 효력유지, 당첨사실 삭제, 일정기간 청약제한' 제재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 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2013.1월 시행예정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43)

1-8.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43)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'영주'하고 있는 개인(재외동포)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.
 - 지금까지는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'외국의 국적을 보유'하고 있는 개인에 한해 우선 공급하여,
 - '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' 개인(재외동포)은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.
- 이는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안정적 국내정주 지원을 통해 국내 경제·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.
 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제한 완화

- 추진배경 :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
- 주요내용
 - 외국인 주택단지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만이 우선공급 대상이었으나, 동 대상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
- 시행일 : 2013.1월 시행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	○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외국국적 보유자에 한해 우선공급	○ 외국인 주택단지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 한 재외동포까지 확대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 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2013.1월 시행예정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43)

1-9.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(<http://nhf.mltm.go.kr>) 서비스 개시

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☎ 044-201-3338)

- ▶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(<http://nhf.mltm.go.kr>)」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 -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, 청약제도,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- ▶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찾기 어렵고, 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,

 -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」을 통해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*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 - ▶ 이와 함께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, 상품별 대출조건·절차·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,

 - 그간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개편,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 - 또한, 주택 매물/시세정보, 분양정보, 내집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 서비스 개시

- 추진배경 :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
- 주요내용
 - 전세자금 대출, 청약제도,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「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」 구축 및 서비스 제공
- 시행일 : 2012.12. 오픈(<http://nhf.mltm.go.kr>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	〈신설〉	○ 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http://nhf.mltm.go.kr 구축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 법령정보)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2013.1월 시행예정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
1-10.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- 입주자 회장 간선제로 뽑고, 동대표 임기 제한 완화 -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☎ 044-201-3369)

▣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입주민의 자율이 크게 확대됩니다.

-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민의 직선제로만 선출이 가능하였으나,
 - 앞으로는 관리규약에 정하게 되면, 동별 대표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제로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선거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.
 - 아울러 그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, 4년간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었으나, 입주민의 자율성 확대로 앞으로는 2회, 4년간 재임 후 1회 쉬게 되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유 크게 확대

아파트 관리제도 개선

- 추진배경 : 아파트 선거비용을 절감하고, 입주민의 자율성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·감사의 간선 선출허용(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 한함)
 - ②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(다만,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함)
- 시행일 : 2013년 1월(잠정,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)

1-11.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☎ 044-201-3367)

-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.
 - 지금까지 **단지내 복리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** 정해져 있어 **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, 활용이 곤란**하였습니다.
 - 특히, **복리시설은 규정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(주택법)하여, 거주자 특성 변화에 대응 한계가 있었으며,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** 있었습니다.
 - * **예 : 주민운동시설(실외)은 인근 동(棟)에서 소음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, 작은 도서관은 방치되거나 독서실 등으로 활용**
 -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되면, 지역 및 단지특성 등에 따라 **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적용**할 수 있게 되어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 - 아울러 **기존의 주택단지도 총량제를 만족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활용(용도변경)할 수** 있게 되었습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국토해양뉴스)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 개편

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

- 추진배경 :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·운영
- 주요내용
 - ① 경로당, 보육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총량의 범위내에서 입주자가 자유롭게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시행일 : 2013년 하반기(잠정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규개위 심의중)

1-12.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

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☎ 044-201-3367)

-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.
 - 지금까지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, 안내표지판 규격 및 설치위치 규정 및 주택의 평면을 10센티미터 단위로 설계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.
 - 특히, **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만 허용**하고 주택용도는 허용하지 않아, **1층 세대 알파룸**(취미, 작업 공간 등) 등 다양한 주택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 - 앞으로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이 정비되면, 지역 및 단지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이 수려해질 것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 개편

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

- 추진배경 : 공동주택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
- 주요내용
 - ①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 도모
- 시행일 : 2013년 하반기(잠정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규개위 심의중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직선제 선출 ○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, 4년간만 재임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허용(관리규약에 정할 경우) ○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(다만, 계속 재임은 2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 뉴스>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	주택법 시행령 ('13.1월)
			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9)
②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물별 면적제한이 있어 자유로운 설치가 곤란하고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등도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게 총량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 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 건설기준 전면개편 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('13.7월)
			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7)
③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도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도시경과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 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 건설기준 전면개편 	주택법 시행령 ('12.12월)
			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7)

1-13.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- 향후 2년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 -

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(☎ 044-201-3392, 3386)

▣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(원)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

- 지금까지 '06.9.25이후(비수도권은 '09.7.1이후)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,
 - 앞으로는 '14.12.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(원)의 부담이 줄게 되고 최근 부진한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(단,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)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국토해양뉴스)보도자료)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

- 추진배경 :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, 주택시장의 안정추세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, 경기회복시까지 일정기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
- 주요내용
 - ① '14.12.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(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(종료일)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)
- 시행일 : 2012년 12월 18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☐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	○ '06.9.25이후 (비수도권은 '09.7.10이후)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	○ '14.12.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(단, 개정안 시행 일 당시 부과종료시점 이후 4개월이 경과하 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}국토해양 뉴스}보도자료}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	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('12.12.18)
			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(044-201-3392, 3386)

1-14. 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

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(☎ 031-210-2720)

- 스마트폰이나 PC에서 **나만의 맞춤형지도**를 제작할 수 있는 전자문서(PDF)형식의 지도가 제작되어 서비스될 계획입니다.
 - 지금까지 전자지도는 전자설계도면(CAD) 형식 등으로 되어있어 **이용에 제약이 많이** 있었고, 종이지도 역시 한정된 종이에 인쇄되어 다양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.
 - 새롭게 제작되는 전자지도는 **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**에 따라 **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**이 가능합니다.
 - 또한,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**정보를 추가**하거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**편집 기능으로 나만의 맞춤형 지도 제작**이 가능해 등산로/자전거지도 등 국민편의 생활 지원에 까지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.
 - 2012년에는 우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, 2013년에는 국가기본도(1/5,000)까지 확대됩니다.
 - 더불어,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**툴바(S/W) 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**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등산로·자전거길 “나만의 맞춤지도” 만든다.

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

- 추진배경 : 전자지도는 **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**에 따라 **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**이 가능
- 주요내용
 - 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, 2013년에는 국가기본도(1/5,000)까지 확대
 - ② 툴바(S/W) 등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 계획
- 시행일 : 2013년 6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지도·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	○ 전자도면(CAD) 및 종이 형식의 지도	○ PDF 방식의 지도 배포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<국토해양뉴스> 보도자료>등산로·자전거길 “나만의 맞춤 지도” 만든다.	(’13. 6월)
			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(031-210 -2720)



건설·수자원정책

- 2-1.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31
- 2-2.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33
- 2-3.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35
- 2-4.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신설37
- 2-5. '13년 “수자원전문대학원” 개원, 이상기후대비 물 전문가 육성39

2-1.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☎ 044-201-3581)

- 발주청의 건설공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전문회사 선정과정에서 **입찰부담 경감, 공정성 및 변별력 확보**를 위해 **평가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**할 계획입니다.
- 감리업무 특성상 설계용역과 달리 **특별한 기술제안** 내용이 없어 변별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**기술력 평가(SOQ·TP)**를 의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**경제적 부담과 행정수요를 증가**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.
 - 이에 따라, 감리용역에 대한 **기술제안서(TP)제도는 폐지**하고, 기술자평가(SOQ)는 **임의규정으로 전환**하되, 대상 용역비(현행 10억원)를 **2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**하여 시행하게 됩니다.
- 또한, 발주청마다 정부에서 제시된 **감리실적 및 경력 등의 예시**를 여과 없이 따름으로 인해 **발주청의 재량권을 제한**하고, 특정업체에 **유리한 기준**을 제시하는 등 **입찰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**하였습니다.
 - 이를 위해 발주청 재량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**예시를 삭제**하고, PQ평가기준 마련 시 **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계자문위 심의**(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)를 거쳐 **일반에 공개**하도록 하였습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법령정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
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감리전문회사 PQ기준 주요개정

- 추진배경 : 감리용역 PQ의 공정성 강화, 입찰부담 완화, 공생발전 및 변별력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기술제안서 평가 폐지, 기술자평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삭제
 - ② PQ평가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 도입 및 책임감리원 역량평가 비중 확대(2점→4점)
- 시행일 : 2013년 1월(건기법 시행규칙), 2013년 4월(감리용역 PQ기준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㉑ 기술제안서 평가 폐지, 기술자 평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삭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역비 30억원 이상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○ 용역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자 평가서 평가 ○ 실적 및 경력 등 예시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지 ○ 용역비 20억원 이상의 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 평가서 평가 ○ 예시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참고) 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전부개정 	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, 고시 (’13.1월, 4월)
		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1)
㉒ PQ평가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 도입 및 책임감리원 역량평가 비중 확대(2점→4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의절차 별도규정 없음 ○ 책임감리원 면접배점 (2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계자 의견수렴, 위원회 심의 후 일반 공개 ○ 책임감리원 면접배점(용역규모에 따라 2~4점) - 20억원미만 2점, 20억원이상~30억원미만 3점, 30억원이상 4점 ☞ (참고) 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전부개정 	고시 (’13.4월)
		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1)

2-2. 감리원 복지향상 및 합리적인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☎ 044-201-3581)

- 공무원에 준하는 감리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감안하여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 감액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,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.
 - 공공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청렴의무 및 처벌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감리원이 법정공휴일로 인한 근무일수(1개월 22일)가 부족한 경우 대가를 감액하고 있어, 근로조건 차별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 - 이에 따라, 현행 법정교육과 더불어 법정공휴일로 인해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감리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.
 - 또한, 70%미만의 저가낙찰 현장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의 특성상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발주청에서 부실우려를 판단하여 감리원 추가배치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 - 이에 따라,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가낙찰로 절감된 공사비만큼 감리원의 추가 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.
-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

건설공사 감리대가 일부개정 주요내용

- 추진배경 : 감리원의 복지향상 및 부실감리 방지
- 주요내용
 - ①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 감액대상에서 제외
 - ② 저가낙찰 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
- 시행일 : 2013년 1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감액 대상에서 제외	○ 별도 규정없음	○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 (’13.1월)
		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 3581)
② 저가낙찰 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	○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원 추가배치	○ 70%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- 낙찰율에 따라 총감리원 수의 20~50%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 (’13.1월)
		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 3581)

2-3.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

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☎ 044-201-3577

-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게 됨에 따라 '2013년부터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이 기준에 맞추어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 -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비용기준을 제시하였고, 발파굴착 등의 공사장 주변 시설물 피해방지 대책 기준과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에 대한 세부적 사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산업안전보건비와 건설공사안전관리비 사용에 혼선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-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

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주요개정

- 추진배경 :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
- 주요내용
 - ①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②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비용
 - ③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
- 시행일 : 2013년 1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작성 및 검토비용 사용과 대가 산정 기준 을 제시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고시 (’13.1월)
		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77)
② 발파·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발파·굴착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사전보 강·보수·임시이전 등의 비용을 토목·건 축등의 관련 분야 설계기준으로 산출 및 집행 가능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고시 (’13.1월)
		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2-2110- 6308)
③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 책 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의 우회해 따른 교 통 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 마련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고시 (’13.1월)
		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77)

2-4.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신설

2015세계물포럼준비기획단 (☎ 02-502-8935)

▣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물포럼 준비를 전담할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.

- 세계물포럼은 1997년 이래 3년마다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로 세계물위원회와 개최국이 공동 개최하며 각국의 수반, 장관, 국회의원 등을 포함하여 3만명 이상이 참여합니다.
- '11년 11월,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지가 대구경북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('13~'15)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전담할 조직위원회가 '13년 상반기에 설립됩니다.
- 향후 조직위원회는 체계적인 행사 준비를 위해 한국 고유의 의제 발굴, 교통숙박 대책 마련, 홍보 등을 추진하며,
 - 한국이 세계 물 관련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포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를 개최·참여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

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설립

추진배경 : 제7차 세계물포럼('15)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 전담조직 설립 등을 규정한 『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』 제정('12.12.18)

주요내용

- ①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신설
- ② 세계물포럼기금의 설치 및 관리, 수익사업 규정 등

시행일 : 2012년 12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설립	—	○ 조직위원회 신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법령정보>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	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(’12.12월)
			2015물포럼 준비기획단 (02-502-8935)

2-5. '13년 “수자원전문대학원” 개원, 이상기후대비 물 전문가 육성

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(☎ 044-201-3592)

- ▶ 전 세계적인 이상홍수,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여건변화, 물 시장의 급격한 성장(21C 블루골드 산업) 등에 적극 대응하고,

 - 국내 물 산업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“수자원 전문대학원”을 설립('13.3월 개원 계획), 글로벌 물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.
 - * 성균관대학교 내 ‘수자원전문대학원’을 설립, 매년 30명 규모의 석박사급 전문가 육성,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5억원을 국비 지원
- ▶ 지금까지는 기존 대학의 토목, 환경공학 전공에서 이론위주 교육을 추진,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등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는 한계

 - 기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물 관련 교육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
 - * 물류, 에너지, 해양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특화된 전문대학원, 특성화대학 등을 설립하여 관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
- ▶ 2013년부터 매년 30명씩 향후 5년간 약 200명 규모의 물 전문가를 양성, 국내 물산업을 리드하고,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.

 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알림마당)보도자료>국내최초, 글로벌 물 전문가 양성 위한 「수자원전문대학원」 설립

<2013년도 수자원전문대학원 지원 항목>

- 추진배경 : 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자원전문대학원 설립운영지원
- 주요내용
 - ① IT·BT·NT기반 수자원기술 과정
 - ② 물 산업 해외수주를 위한 국제설계기준, 경제·경영 과정
- 시행일 : 2013년 3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2013년도 수자원전문대학 원 개원	〈신설〉	○ 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자원전문대학원 설립운영지원 ☞ (참고) 국토해양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 자료>국내최초, 글로벌 물 전문가 양성 위 한 「수자원전문대학원」 설립	수자원전문대학 설립 (‘13.3월)
			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(044-201-3592)

국 토 정 책

- 3-1.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43
- 3-2.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45
- 3-3.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47
- 3-4.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‘새만금개발청’ 신설49
- 3-5.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51
- 3-6.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53
- 3-7.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55
- 3-8.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57
- 3-9. 건축심의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 단축59
- 3-10. 도시미관을 창출하고,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61

3-1.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(☎ 044-201-3689)

- 앞으로 「행정도시건설 특별법」의 개정으로 외국학교법인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.
 -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*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(외국법령에 근거하여 설립·운영되는 학교) 설립 및 부지매입, 설립·운영자금 등의 제공 등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
 - * 경제자유구역, 제주특별자치도, 기업도시(전문대학 이상으로 한정) 등
 - 예정지역 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 및 장기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유치를 촉진하여
 -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「행정도시건설 특별법」 개정을 통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)국토해양뉴스)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

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

- 추진배경 :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
- 주요내용 :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
- 시행일 : 2013년 중 시행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㉑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	〈신설〉	○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 뉴스>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허용	행정도시건설 특별법 (‘13년)
			기업복합 도시과 (044-201-3689)

3-2.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(☎ 044-201-3691)

- 기업도시 개발시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에 대한 사후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.
 - 지금까지는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개발이익 사후조정이 가능하게 합니다.
 - 이로 인하여 기업도시 시행자는 개발이익이 당초보다 20퍼센트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 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이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사후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도시 시행자의 적정한 이익보전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

- 추진배경 : 준공시 개발이익이 개발계획 승인시 보다 20%미만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과도한 개발이익 재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 발생
- 주요내용
 - 개발계획 승인시와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%이상 증가하거나 5%이상 감소하는 경우 사후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
- 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	○ 기업도시 개발 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 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 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	○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	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(’13.1.1)
			국토해양부 기업복합 도시과 (044-201-3691)

3-3.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

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(☎ 044-201-3691)

- 기업도시 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.5퍼센트P 하향 조정하여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계획입니다.
 - 기업도시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최소 25퍼센트 이상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과도하여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 -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.5퍼센트 하향조정함으로써 민간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게 됩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]보도자료)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

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

- 추진배경 :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과도하여 민간의 투자욕 저하
- 주요내용
 - 적정 개발이익 산출비율을 개정하여 재투자율을 12.5% 하향 조정
- 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	○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최소 25퍼센트 이상	○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.5퍼센트 P 하향조정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	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(’13.1.1)
			국토해양부 기업복합 도시과 (044-201-3691)

3-4.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'새만금개발청' 신설

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 (☎ 044-201-3696)

- 새만금사업 소관부처 분산에 따른 **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**하고, 새만금개발에 관한 **지원체계를 강화**할 계획입니다.
 - 새만금사업은 '11. 3월 확정된 "새만금 종합개발계획(Master Plan)"에 따라 30%를 농지로, 70%를 산업·관광·과학연구·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
 - 그동안 토지용도에 따라 6개 부처(농식품·국토·지경·환경·문화·교과부 등)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유사사업 중복, 용지별 사업내용 상충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 효율성이 저하
 - 『새만금 특별법』제정('12.11.22 국회통과)에 따라 **'새만금개발청'**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**설치**
 -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**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**하고,
 - **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·조정·시행** 등의 업무를 담당
 - 또한, 원형지, 선수공급 등 **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**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

- 추진배경** : 추진체계 분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,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,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『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을 여야 국회의원 172명 공동발의를 통하여 제정('12.11.22)
- 주요내용**
 - ① 국무총리실 새만금기획단 폐지, 새만금개발청 신설(국토부 산하)
 - ②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가능 등
- 시행일** : 2013년 9월 12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새만금개발청 설립	〈신설〉	○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<정보마당> 법령정보>새만금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특별법	새만금사업 지원 및 추진에 관한 특별법 (’13. 9월 예정)
			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 (044-201-3696)

3-5.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☎044-201-3751)

-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·휴식공간으로 조성됩니다.
 - 도시공원에서 **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**하고, 도시공원의 **범죄예방 안전기준** 마련하였습니다.
 - 공원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원내 조명, 나무의 식재방법, CCTV(폐쇄회로 텔레비전)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 - 또한, 소규모공원에 **철봉·평행봉 등 간단한 운동기구**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공원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.
 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도시공원법시행규칙

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

- 추진배경 : 도시공원에서 범죄예방 및 사회적 변화에 맞는 공원시설의 설치
- 주요내용
 - ① 범죄예방 계획수립,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
 - ② 소공원·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
- 시행일 : 2013년 1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공원조성계획에 범죄예방계획 수립	〈신설〉	○ 공원조성계획에 토지이용, 동선, 공원시설 배치와 더불어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	도시공원법 시행규칙 (’13. 1월)
			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47)
② 범죄예방 일반기준 제시	〈신설〉	○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범죄예방 자연적 감시, 접근통제,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	도시공원법 시행규칙 (’13. 1월)
			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47)

3-6. 민간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조성 활성화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☎ 044-201-3747)

- ▣ 10만㎡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이 다양화 되어 사업추진이 쉬워집니다.
 - 지방자치단체에 공원조성비(조성비, 토지비 등의 80% 이상)를 예치하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.
 - 사업추진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부진했으나,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.
- ※ (민간공원제도) 10만㎡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80%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20%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허용(도시공원법 제21조의2)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도시공원법시행규칙

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내용

- 추진배경 : 10만㎡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활성화
- 주요내용
 - 도시공원에서 민간공원조성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
 - ☞ (현행)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 → (개정) 기존 요건에 '공원조성비 4/5 예치' 요건 추가
- 시행일 : 2013년 7월(예정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㉑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	사업시행자 지정요건 :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	○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: ①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, ② 공원조성비 4/5 예치	도시공원법 시행규칙 (’13. 7월)
			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47)

3-7.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

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☎ 044-201-3743)

-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**생활편익시설, 소득증대 등 사업에 지원을 확대**할 계획입니다.
 - 2013년 생활편익시설, 토지매입비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12년 839억원 보다 234억원이 증가(28%)한 1,07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.
 - 지금까지 주민편익시설(도로·소하천 정비 등) 위주의 편향된 주민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,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.
 - 구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한도액을 종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·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또한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충분히 매수하지 못하였으나, 2013년도 금년보다 21% 증액한 367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크게 활성화 된다.

2013년도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: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사업 지원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'13년도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(839억원 → 1,073억원)
 - ② 소득증대사업 지원한도액 확대(2억원 → 5억원)
- 시행일 : 2013년 1월(국회 예산안 심의중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Ⅰ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	○ 839억원 지원	○ 1,073억원으로 지원 확대 ☞ (참고) 국토해양부홈페이지>국토해양 뉴스>보도자료>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크게 활성화 된다	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 (’13. 1월)
			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43)

3-8.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

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(☎ 044-201-3770)

- 2013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 : www.eais.go.kr)를 통해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.
 -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은 시·군·구청을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2013.1.1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 - 이전까지 민원24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발급은 가능했지만 이제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 : www.eais.go.kr)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면까지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앞으로, 민원24 등을 통해서도 건축물 현황도면이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 : www.eais.go.kr) 홈페이지

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

- 추진배경 : 건축주가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
 - ②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무료
- 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	○ 행정관청 방문시 발급	○ 건물축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☞ (참고)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홈페이지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(’13. 1월)
			국토해양부녹색 건축과 (044-201-3770)

3-9. 건축심의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건축 허가 기간 단축

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(☎ 044-201-3764)

▣ 건축허가 전에 시행되는 **건축심의 제도**를 **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**하도록 하여 **건축 허가 기간이 단축**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*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데,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, 심의 절차도 없어 허가를 받기까지 2~6개월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.

* (심의 대상) 다중이용 건축물(문화 및 집회, 종교, 판매, 운수시설, 종합병원, 관광호텔의 면적 5천㎡이상 또는 16층이상 건축물), 미관지구내 건축물, 분양 건축물

- 이러한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축심의회는 접수일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, 심의 위원을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며, 심의결과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심의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<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<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

2013년도 건축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

추진배경 : 건축심의 투명성·공정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

주요내용

- ① 건축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내 의무적 개최
- ② 심의 신청자에게 심의위원 명단 공개
- ③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시행일 : 2012년 12월 12일(건축법 시행령 개정·공포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건축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내 의무적 개최	-	○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의 개최	건축법 시행령 (’12.12.12)
			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(044-201-3764)
② 심의위원 명단 공개	-	○ 심의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 게 위원 명단 공개	건축법 시행령 (’12.12.12)
			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(044-201-3764)
③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	-	○ 회의는 구성위원(위원장과 위원장이 참여 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) 과반수 출석으 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	건축법 시행령 (’12.12.12)
			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(044-201-3764)

3-10. 도시미관을 창출하고,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

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(☎ 044-201-3764)

- ▣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도시미관을 창출하고, 소규모 건축물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이용 편의 위주로 개선하였습니다.
-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까지는 1미터 이상을, 8미터까지는 2미터 이상을, 그 이상은 높이의 1/2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.
 - 이 규정으로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은 계단형으로 건축하고, 준공 후 이곳에 샷시 등을 설치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.
 - 이에 따라, 건축물 높이 9미터까지는 1.5미터 이상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불법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, 건축물의 이용 편의도 높였습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

2013년도 건축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

- 추진배경 : 도시미관을 창출,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,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
- 주요내용
 - ① 건축물의 높이 9m 까지는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.5m 이상 띄우도록 함
- 시행일 : 2012년 12월 12일(건축법 시행령 개정·공포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	○ 전용·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 거리 이상 이격 1. 높이 4m 이하 부분 :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 2. 높이 8m 이하 부분 :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상 3. 높이 8m 초과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1/2 이상	○ 전용·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 거리 이상 이격 1. <삭제> 2. 높이 9m 이하 부분 : 대지경계선에서 1.5m 이상 3. (현행과 같음)	건축법 시행령 ('12.12.12)
			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(044-201-3764)

교통정책

- 4-1. 반쯤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쯤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65
- 4-2.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67
- 4-3.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(TPMS) 설치 의무화69
- 4-4.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71
- 4-5.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73
- 4-6.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75

4-1.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의무 신설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☎ 044-201-3840)

- ▣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
 -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반품되었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품된 차량임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어 반품 차량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으나,
 - 이르면 2012년 12월 중순('12.11.22 국회통과, 국무회의 후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예정) 부터는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품차량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.
 -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 반품차량임을 모른 채 구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
-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보도자료 > 내년 건강보험료 2.8% 인상

반품차량 판매시 고지의무 신설

- 추진배경 :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신조차로 판매함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
- 주요내용
 - ① 반품으로 말소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반품 차량 사실 고지 의무 신설
 - * 고지의무자 : 자동차 제작· 판매자 등
 - ② 고지의무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
- 시행일 : 2013년 1월('12.11.22 국회 본회의 의결)
 - ※ 국무회의 후, 개정법률 공포 시행 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반품차량 판매시 반품차량 고지의무 신설	○ 고지의무 없음	○ 고지의무 신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자동차관리법	자동차관리법 ('13. 1.)
			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044-201-3840)

4-2.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

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☎ 044-201-3844)

-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(교통안전공단)에 정비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고, 입력된 정보를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.
-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, 정비,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으나,
 - 2013년 9월부터('12.11.22 국회통과, 2013년 9월 1일 시행예정) 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련 정비내역 등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. 이는 이르면 6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·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중고자동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, 과잉 정비·중고부품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건강보험료 2.8% 인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상

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

- 추진배경 : 자동차 정비이력 통합정보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
- 주요내용
 - 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·정비·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 전송의무 신설
 - *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시행일 : 2013년 9월 1일('12.11.22 국회 본회의 의결)
 - ※ 동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2013년 9월 1일로 규정,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시범서비스는 빠르면 6월부터 실시 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㉑ 차량 판매·정비· 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	○ 전산정보처리 조직 통지의무 없음	○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신설 <small>☞</small>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자동차관리법상	자동차관리법 (’13. 9월)
			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044-201-3844)

4-3. 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(TPMS) 설치 의무화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☎ 044-201-3851)

- ▣ 양쪽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타이어파손, 핸들 흔들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(TPMS) 장착을 의무시행하게 됩니다.
 - 자동차 안전기준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(TPMS)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, 2013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승용차 및 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(TPMS)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, 의무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 - 앞으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, 자동차 국제기준 도입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

- 추진배경 : 타이어 공기압 부족 등 타이어 파손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시행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.5톤 이하 승합, 화물, 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
- 시행일 : 2013년 1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	○ 없음	○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.5톤 이하 승합, 화물, 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	자동차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 (’13. 1월)
			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
4-4.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확대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☎ 044-201-3851)

▣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**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**입니다.

-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연료소모량도 절감되는 2중 효과가 있어, 차량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왔으며,

국민의 생명 보호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**모든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**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.

- 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

총중량 4.5톤이상 승합차 → **모든 승합차**(시행일 '13.8.16)

* 최고속도제한장치 : 승합차(110km/h), 화물자동차(90km/h)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

추진배경 :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

주요내용

① 시행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

시행일 : 2013년 8월 16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최고속도제한 장치 적용대상 확대	○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자동차 ○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특수자동차	○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자동차 →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 ○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특수자동차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법령정보)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	자동차안전기준 에 관한 규칙 (’13. 8월)
			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
4-5.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

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☎ 044-201-3851)

▣ 자동차가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 하였을 때 **보행자의 피해(상해)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.**

-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% 이상으로 매년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, 차 대 보행자 충돌사고시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**보행자머리 및 보행자다리 상해기준을 마련하여, 승용자동차에 의무 적용하게 됩니다.**

- 승용자동차에 의무 적용(시행일 : '13. 1.1)

- 앞으로 단계별로 승합차, 화물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, **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차 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사망사고나 상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**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

추진배경 : 차 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상해감소를 위해 안전기준 강화

주요내용

- ① 시행일부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함

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 강화	○ 없음	○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을 의무적용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	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(’13. 1월)
			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
4-6.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
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(☎ 044-201-4602)

▣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, 2013년 1월부터 응시원서 접수 당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50%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

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

추진배경 :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

주요내용

-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% 감면

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철도운전면허 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	○ 전액 본인 부담	○ 응시수수료 감면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% 감면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	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지침 (’13. 1월)
			국토해양부 철도기술 안전과 (044-201-4602)



물류·항만

- 5-1.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79
- 5-2.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81
- 5-3.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83
- 5-4.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86
- 5-5.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88
- 5-6. 과징금·벌금 병과제도 개선89
- 5-7.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91
- 5-8.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93
- 5-9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95
- 5-10. 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97

5-1.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

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(☎ 044-201-4177)

-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를 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 -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비용 및 사용기간 제한(5년 이내) 등으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.
 -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

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임대 특례 마련 내용

- 추진배경 : 사업시행자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로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촉진
- 주요내용
 - ①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
 - ②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
- 시행일 : 2013년 6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 임대	○ 국유지 매입 또는 5년이내 단기 사용 허가 -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	○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 -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항만법	항만법 (’13. 6월)
			국토해양부 항만지역 발전과 (044-201-4177)

5-2.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

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(☎ 044-201-4145)

- 항만공사 시행 관련 타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시점을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 시점으로 변경하고,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감소되도록 할 예정입니다.
-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허가 고시한 경우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하였으며, 타 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습니다.
- 이에 대해 타 법률에 의한 의제시점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로 변경하고, 타 기관 협의시 20일 이내 의견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며,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괄협의회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만법

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 개선 내용

- 추진배경 : 항만공사 관련 의제처리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불편 해소
- 주요내용
 - ① 항만공사 의제처리 시점을 시행허가 고시에서 실시계획 수립 공고시점으로 변경
 - ② 관계기관 협의시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
- 시행일 : 2013년 6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인·허가 의제시점	○ 항만공사 시행 또는 허가사실을 고시한 경우	○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한 경우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항만법	항만법 (’13. 6월)
			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(044-201-4145)
② 관계기관 협의	○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- 20일 이내 의견 제시	○ 관계행정기관이 협의요청에 대하여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 로 간주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항만법	항만법 (’13. 6월)
			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(044-201-4145)
③ 일괄협의회 제도	-	○ 인·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항만법	항만법 (’13. 6월)
			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(044-201-4145)

5-3.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(☎ 044-201-4003)

▣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시행됩니다.

국제물류주선업 :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“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‘포워딩(forwarding)’업이라 부름

- 우선,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**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**하여야 합니다.
 -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**등록을 한 지 2년 6개월 이상**이 경과한 업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일제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또한, 그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던 **벌금(1천만원 이하) 이 과태료(200만원 이하)로 경감**됩니다.
 - **변경등록 신고기간**은 종전 30일에서 60일로, **양도·양수·상속·합병·휴업 신고기간**은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.
 - **휴업제한 기간**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,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관청에 **폐업신고**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 - 아울러, 아포스티유(Apostille)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**아포스티유 확인서**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

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신고제도 개편

추진배경 : 국제물류주선업자 부담 완화 및 국제물류주선업계 시장기능 활성화

주요내용

- ① 등록기준의 주기적(등록일부터 3년마다) 신고제도 시행
- ② 변경등록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완화(벌금 → 과태료)
- ③ 변경등록 신고기간 연장(30일 → 60일)
- ④ 양도·양수, 상속, 법인 합병, 휴업 신고기간 연장(15일 → 30일)
- ⑤ 휴업제한 기간 연장(6개월 → 1년)
- ⑥ 폐업 시 신고의무 폐지
- ⑦ 외국인·외국법인에 대한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제도 시행

시행일 : 2012년 12월 3일('12.12.3 공포 및 시행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	○ 1천만원 이하 벌금	○ 200만원 이하 과태료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물류정책기본법 (’12. 12월)
			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(044-201-4003)
② 변경등록 신고기간	○ 30일	○ 60일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 (’12. 12월)
			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(044-201-4003)
③ 양도·양수, 상속, 법인 합병, 휴업 신고기간	○ 15일	○ 30일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 (’12. 12월)
			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(044-201-4003)
④ 휴업제한 기간	○ 6개월	○ 1년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물류정책기본법 시행 (’12. 12월)
			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(044-201-4003)
⑤ 폐업신고	○ 15일 이내에 신고	○ 폐지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물류정책기본법	물류정책기본법 시행 (’12. 12월)
			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(044-201-4003)

5-4.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☎ 044-201-4007)

▣ 추진 배경

- 물류단지 지정·개발 시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을 준용함에 따라 민간의 규정해석의 어려움 해소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및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되던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주요 사항

□ 주요 내용

-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**직권말소제도 도입**
-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**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·허가제도 도입**
-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**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**
-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**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**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**사후관리규정 신설** 등
- 물류단지계획 인가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되, 국가는 물류정책상 필요할 때 개발토록 함

□ 시행(수립)일 : 2013년 6월

*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('12.10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○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 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○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○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 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 후관리규정 신설 등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'13. 6)
			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

5-5.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☎ 044-201-4007)

▶ 추진 배경

- 행정기관의 재량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개선합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주요 사항

□ 주요 내용

-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·예외적금지(네거티브) 방식으로 전환
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

□ 시행(수립)일 : 2013년 7월(국회제출 추진)

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	-	○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 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 허용(네거티브) 방식으로 전환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'13. 7)
			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

5-6. 과징금·벌금 병과제도 개선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☎ 044-201-4007)

▣ 추진 배경

-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과 행정형벌(징역 또는 벌금)을 병과하고 있으나,
 -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과징금·벌금 병과제도 개선 주요 사항

□ 주요 내용

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,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
 -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
 - 1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병과 제도를
- 벌금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는 제도로 개선

□ 시행(수립)일 : 2013년 7월(국회제출 추진)

* 개정법률안 입안('12.12~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㉑ 과징금·벌칙 병과 제도개선	-	○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과징금·벌금 병과 규정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에 대해 벌칙(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을 삭제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('13. 7)
			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

5-7.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

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☎ 044-201-4011)

- ▣ 「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(8.4)」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
- 전국 지방자치단체(234개) 창고시설 인·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 및 정보서비스 강화
 - * '12.12월현재 물류창고업 등록현황(3,612건) : 수도권 1,570건, 지방 2,042건
 -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, 신고·변경·취소업무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'13년 1월부터 제공 실시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서비스 실시

- 추진배경 :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물류정보센터에 연계 민원 신청 및 각종 가공 정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①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(2012년 11월)
- 시행일 : 2013년 1월
 - *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(8.4)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물류창고업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('12.11)하고,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'13년 1월부터 정상 운영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물류창고업 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○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('13.1)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	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('12.8)
			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11)

5-8.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(☎ 044-201-4018)

- ▣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 및 운송업체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.
- 첫째, 화물운송시장의 불필요한 다단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가 시행되어,
 - 일반화물운송사업자(소유대수 2대 이상)는 운송계약 화물의 50%, 운송주선 겸업자는 30%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합니다.
 - 둘째,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하여,
 -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%('15년은 15%, '16년부터는 20%)를 운송하여야 합니다.
 - 마지막으로,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,
 -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되어 운수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우수업체 인증, 운송능력 평가, 직접운송의무비율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 검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법령정보)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2013년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

- 추진배경 :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업체의 운송기능 회복
- 주요내용
 - ①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
- 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직접운송의무 비율제, 최소운송 기준 및 화물운송 실적실제고제	○ (없 음)	○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(‘13. 1월)
			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18)

5-9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(☎ 044-201-4022)

- ▣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의 개정 시행(2013.1.1.)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.
- 사무실은 주사무소 20제곱미터 이상, 영업소 10제곱미터 이상에서 “영업에 필요한 면적”으로, **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“적재물배상보험 가입”으로 의무화시켰으며,**
 - 이는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이사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**실질적 보상**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

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

- 추진배경 : 화물운송 주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이사화물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 일부 변경
- 주요내용
 - ① 사무실은 일정면적 확보에서 “영업에 필요한 면적”으로, 이사화물 피해보상은 이행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“적재물배상보험 가입”으로 의무화
- 시행일 : 2013.1.1.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,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, 관리 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 이상(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 이상)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 ○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(이사 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만 해당한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업에 필요한 면적. 다만,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 ※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 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(’13.1.1.)
			국토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22)

5-10. 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

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(☎ 044-201-4017)

- 택배분야 집·배송 차량의 부족 해소와 동시에,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가 택배차량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1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.
- '01년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 및 TV 홈쇼핑 활성화 등으로 택배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,
 - * '01년부터 '11년까지 택배 물동량은 연평균 20.1%, 매출액은 연평균 17.6% 성장
 - 택배 집배송 차량은 '04년 이후 신규 공급이 동결되어, 현재 택배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량에 한해 신규 허가대수를 산정하여 사업용 택배차량을 한시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.
 - * 택배차량 30,061대 중 14,719대(49%)가 자가용 차량으로 운행 중
- 이렇게 되면, 택배시장내 사업용 차량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영세한 택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택배업에 종사하게 되어 택배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
- 향후일정**
 - 사업자인정 및 허가대수 확정(~'13.1.15)
 - 자가용 택배기사별 허가 대상자 사전심사('13.2월 중)
 - 지자체별 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('13.2~)
 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

자가용 택배차량 영업용으로 전환

추진배경 : 집화, 간선수송, 배송의 택배 운송구조에서 간선수송을 담당하는 대형차량은 충분하나, 집배송을 담당하는 소형차량은 부족한 실정에서 차량 부족분을 비영업용(자가용)으로 충당하여 운행

주요내용

① '12년도 공급기준 고시('12.4.13) 이전부터 택배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산정 후 지자체별 허가 시행('13.2월중)

* 허가대상자는 택배종사기간, 운송실적 증명서류, 운전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

시행일 : 2013.1월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<input type="checkbox"/>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근거 마련	<신 설>	○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※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898, '12.12.12. 제정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정보마당) 법령정보)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('13.1월)
			국토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17)



항공정책

- 6-1.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을 변경101
- 6-2.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103
- 6-3.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104
- 6-4.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.106

6-1. 회전익항공기의 크기에 따라 헬기장 활주로 길이·폭을 변경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☎044-201-4349)

▣ 헬기장의 활주로 길이·폭을 항공기 크기*의 1.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
* 항공기 크기란 해당 헬기장에 사용 예정인 가장 큰 회전익항공기의 주 회전날개를 포함한 전체 길이와 폭 중 큰 값을 말함

-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길이·폭에 대하여 등급을 폐지하고 모든 헬기장은 회전익항공기의 제원에 따라 활주로의 크기를 변경하였습니다.
- 금번 개정으로 헬기장 크기가 국제기준과 일치함으로써 헬기장시설 제도가 선진화 되고 규제완화에 따른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

헬기장 활주로 크기 변경

- 추진배경 : 활주로 크기를 회전익항공기의 제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여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
- 주요내용
 - ① 활주로의 길이 및 폭에 대하여 등급(A~D)을 폐지
 - ② 활주로의 길이와 폭을 항공기 크기의 1.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으로 변경
- 시행일 : 2013년 1월 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		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			관계 부서
㉠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	A급	B급	C급	D급(또는 옥상헬기장)	○ 항공기 크기의 1.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항공법	항공법 시행규칙 (’13.1월)
	90미터 이상	90미터 미만 40미터 이상	40미터 미만 15미터 이상	항공기 기체 길이의 1.2배로서 최소 15미터 이상		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49)
	30미터 이상	20미터 이상	15미터 이상	항공기 기체 폭의 1.2배		

6-2. 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삭제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☎044-201-4349)

- ▣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갓길 설치를 의무화 하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.
- 향후, 헬기장 설치기준을 국제기준 및 외국과 비교분석하고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
 - 금번 개정으로 육상헬기장 갓길 규정이 국제기준과 일치함으로써 헬기장시설 제도가 선진화 되고 민원 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

육상헬기장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

- 추진배경 : ICAO는 육상헬기장의 활주로·유도로 양측에 갓길 설치 규정이 없으나, 우리나라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아 개정이 필요
- 주요내용
 - 육상헬기장의 활주로·유도로 갓길 설치 의무화 폐지
- 시행일 : 2013년 1월 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▣ 육상헬기장 갓길	○ 활주로유도로의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갓길(Shoulder)을 설치를 의무화	○ 갓길 설치를 폐지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	항공법 시행규칙 ('13.1.)
			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49)

6-3.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☎044-201-4350)

- ▣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피해경감을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시설물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었습니다.
 - 지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건축구조가 복잡하여 지진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공항* 여객터미널입니다.
 - * 인천, 김포, 김해, 제주, 청주, 군산, 무안, 광주, 여수, 원주, 양양, 대구, 울산, 포항, 사천공항
- ▣ 15개공항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지진대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
 - 지진대비 지진위험평가, 교육 및 훈련계획, 비상상황관리, 피해유형별 조치사항, 비상대피계획, 재해구호계획 등을 비상대처계획에 수립하여 운영
 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

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

- 추진배경 :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①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(전국 15개공항 여객터미널)
 - ②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
- 시행일 : 2013.1월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①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	○ 미지정	○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 지정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	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('13.1)
			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50)
②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	○ 미수립	○ 지진으로 전국 15개 공항 여객터미널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지진위험 평가, 긴급대피, 비상운영계획, 긴급복구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	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('13.1)
			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50)

6-4. 공항운영 민간운영자도 가능해 진다.

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☎044-201-4355)

- ▶ 항공법이 개정('12.7.27)되면서 민간운영자도 공항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 -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 해 왔으나,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공항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.
- ▶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.
 - * “공항운영증명”은 공항운영자가 인력, 시설, 장비 및 운영절차 등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.
- ▶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 기법 및 공항 간 서비스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
 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

공항운영자 신설

- 추진배경 :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간경영 기법 및 공항운영자간 경쟁체제 도입
- 주요내용
 - ①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, 「한국공항공사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
 - ② 또는 공항운영권한을 부여 받은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·이전받은 자
- 시행일 : 2013. 2월 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☐ 공항운영자	○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자	○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, 「한국공항공사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 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·이전받은 자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	항공법 시행규칙 (’13.2)
			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55)



해양정책

- 7-1.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111
- 7-2.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113
- 7-3.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축소115

7-1.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(☎ 044-201-4377)

- ▣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 - '12.9.5 확정된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을 민간 주도로 개발하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이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박람회장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은 100%, 이후 2년간은 50% 감면할 계획입니다.
 - 또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이 전면개정되는 2013년 상반기에는 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하여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

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

- 추진배경 :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
- 주요내용
 - ①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(법인세, 소득세를 3년간은 100%, 이후 2년간은 50% 감면)
 - ② 해양박람회특구 지정
- 시행일
 - ①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: 2013.1월 (개정안 국회통과, 12.23)
 - ②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: 2013년 3월(개정안 국회통과, 12.23)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(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은 100%, 이후 2년간은 50% 감면) ○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 >법령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	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전면개정 (’13. 3월)
			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(044-201-4377)

7-2.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

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(☎ 044-201-4422)

- 시화호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 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2017년까지 시화호의 수질을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3.8→3.3mg/L, 총인(TP) 0.074→0.065mg/L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화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COD 7,241.3kg/일, TP 193.00kg/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.
 - * '10년도 COD 배출량은 7,761.7kg/일, TP는 203.11kg/일이며, 총량관리 미시행시 '17년도 COD 배출량은 8,703.5kg/일, TP는 251.54kg/일임
 - 이를 위하여 안산·화성·시흥·군포시는 개발계획 조정,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하여 COD 1,462.2kg/일, TP 58.54kg/일을 삭감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]보도자료]시화호 총량관리 시행

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

- 추진배경 : 오염된 시화호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시화호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
- 주요내용
 - ① 관리대상 항목 및 계획기간 : 화학적 산소요구량, 총인 / '13.7.1~'17.12.31
 - ② 관리구역 : 시화호 해역 및 인근 유역(안산·시흥·화성·군포시) 482.94km²
 - ③ 목표수질 : 화학적 산소요구량(3.3mg/L), 총인(0.065mg/L)
 - ④ 할당부하량 : 화학적 산소요구량(7,241.3kg/일), 총인(193.00kg/일)
 - ⑤ 삭감부하량 : 화학적 산소요구량(1,462.2kg/일), 총인(58.54kg/일)
- 시행일 : 2013년 7월(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 승인 후 시행)
 - ※ 2012년 12월까지 「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」수립 예정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㉠ 시화호 연안오염총량 관리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질('10년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학적산 소요구량 : 3.8mg/L - 총인 : 0.074mg/L ○ 오염물질 배출량 ('10년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학적 산소요구량 : 7,761.7kg/일 - 총인 : 203.11kg/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질 : 화학적 산소요구량(3.3mg/L), 총인 (0.065mg/L) ○ 오염물질 배출량('17년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학적 산소요구량 : 7,241.3kg/일 - 총인(193.00kg/일) ※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 >시화호 총량관리 시행	시화호 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('13. 7월)
			국토해양부 해양환경 정책과 (044-201-4422)

7-3.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축소

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(☎ 044-201-4427)

- ▣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대상을 축소합니다.
-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23조에서는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양배출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*에 한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
 - *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(음폐수), 분뇨, 분뇨오니, 폐수, 폐수오니, 수산가공 잔재물, 원료용 동식물 잔재물, 준설토사, CO₂ 스트림
 - 그러나,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예방*, 국제협약과의 조화**,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이행*** 등을 위하여 해양배출 가능폐기물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* 배출해역은 한일, 한중 공동 어업수역에 위치하고 있고 분쟁소지가 있음
 - ** 런던협약/의정서에서는 음폐수, 분뇨, 폐수는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
 - *** 런던협약/의정서 가입국 중 유기성오니를 해양에 배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함
 - 이에 따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'13년부터는 음폐수, 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* 가축분뇨, 하수오니 : '12.1.1부터 해양배출 금지 (완료)
 - * 산업폐수, 폐수오니 : '14.1.1부터 해양배출 금지 (예정)
-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해양환경관리법

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축소

- 추진배경 :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축소
- 주요내용
 - ①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
 - ② '13년부터 음폐수 및 분뇨·분뇨오니 해양투기 금지
- 시행일 : 2013년 1월 1일

【 신·구 대비표 】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제도 시행일)
			관계 부서
□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축소 (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)	<분 노 : 제1호 가목> 「하수도법」 제2조에 따른 분노 또는 분노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분노인 것. 다만, 전처리가 필요 한 분노는 전처리된 것만 해당한다	○ <삭 제>	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6] ('13.1월)
	<분노오니 : 제1호 다목 1)> 「하수도법」 제2조에 따른 분노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오니	○ <삭 제>	
	<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: 제1호 라목>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 된 폐수 중 다음의 것 ○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 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 화시설에서 발생한 액상의 것 ○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 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 료화·퇴비화시설 및 호기성 (好氣性)·혐기성(嫌氣性) 분 해시설에서 발생한 액상의 것 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 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 10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제조시설에서 발 생된 것을 포함한다)	○ <삭 제>	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(044-201-4427)



달라지는 제도 산·구대비표

국토해양부

1. 감정 평가기준 명확화	① 감정 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칙, 예외 불명확 및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등 절차규정 미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정평가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가치 기준평가, 현황평가, 개별평가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,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토록 규정 감정평가업자와 의뢰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과 평가조건 부가관련 규정 신설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</p>	<p>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(13.1.1.)</p> <p>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</p>
	② 목적별·물건별 구체적 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적별(담보, 경매, 도시정비 등) 및 물건별 감정평가(부동산, 권리, 동산 등) 방법과 절차 구체화,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규정 명문화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·객관성 제고</p>	<p>감정평가 실무기준 (13. 초)</p> <p>*규제심사 중</p> <p>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</p>
	③ 공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량제(10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 토지·건물에 한해 종량제(30%) 및 종가제(70%) 절충 도입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제 도입</p>	<p>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(13.1.1.)</p> <p>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(044-201-3424)</p>
2.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2012년 3월부터 4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서비스 (의왕시, 김해시, 남원시, 장흥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(임야)대장, 지적도(임야도), 건축물 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주택가격, 공시지가,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확인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*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</p>	<p>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(13.8월 예정)</p>	
			<p>지적기획과 (044-201-3480)</p>	

<p>3.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도입</p>	<p>○ 제도 없음</p>	<p>○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(PPLIS)을 도입하여,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,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 해소</p> <p>* PPLIS(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,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)</p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미디어>법령정보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</p>	<p>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13.9월)</p> <p>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획단 (044-201-4651)</p>	
<p>4. 국민주택 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</p>	<p>① 국민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</p>	<p>○ 근로자서민전세자금 : 연 4.0%</p> <p>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연 4.2%</p> <p>○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: 연 5.2%</p>	<p>○ 근로자서민전세자금 : 연 3.7%</p> <p>○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: 연 3.8%</p> <p>○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: 연 4.3%</p> <p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</p>	<p>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 (12.12.21)</p> <p>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</p>
<p>5.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</p>	<p>② 청약저축금리 인하</p>	<p>○ 가입기간 1년 미만 : 연 2.5%</p> <p>○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연 3.5%</p> <p>○ 가입기간 2년 이상 : 연 4.5%</p>	<p>○ 가입기간 1년 미만 : 연 2.0%</p> <p>○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연 3.0%</p> <p>○ 가입기간 2년 이상 : 연 4.0%</p> <p>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</p>	<p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12.12.21)</p> <p>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</p>

6. 소형·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	○ 무주택 인정 소형·저가 주택 기준 - 전용면적 60㎡ 이하 +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+ 10년 이상 보유	○ 무주택 인정 소형·저가 주택 기준 - 전용면적 60㎡ 이하 +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2013.1월 시행예정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7.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	○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 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 하여 운영	○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 여부와 상관없 이 ‘당첨취소 청약통장 효력유지, 당첨 사실 삭제, 일정기간 청약제한’ 제재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2013.1월 시행예정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8.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	○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 하는 경우 외국국적 보유자에 한해 우선공급	○ 외국인 주택단지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거주지국의 영주 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(2013.1월 시행예정)
			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(044-201-3338)
9.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	〈신 설〉	○ 기금 관련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 합 제공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 보도자료>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	주택법 시행령 (13.1월)
			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9)
10. 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	○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·감 사의 직선제 선출 ○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, 4년간만 재임 가능	○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·감사의 간선제 선출허용(관리규약에 정할 경우) ○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(다만, 계속 재임은 2기)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 보도자료>아파트 관리,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	주택법 시행령 (13.1월)
			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9)

<p>11.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물별 면적제한이 있어 자유로운 설치가 곤란하고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등도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게 총량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함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</p>	<p>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('13.7월)</p> <p>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7)</p>
<p>12.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도시경과 개선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</p>	<p>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('13.7월)</p> <p>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7)</p>
<p>13.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06.9.25이후(비수도권은 2009.7.1이후)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4.12.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(단,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)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,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</p>	<p>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('12.12.18)</p> <p>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(044-201-3392, 3386)</p>
<p>14.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도면(CAD) 및 종이 형식의 지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DF 방식의 지도 배포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보도자료>등산로지전거길 “나만의 맞춤지도” 만든다</p>	<p>('13. 6월)</p> <p>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(031-210 -2720)</p>
<p>15. 감리 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</p>	<p>① 기술 제안서 평가 폐지, 기술자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역비 30억원 이상 대 상공종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용역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대상공종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지 용역비 20억원 이상의 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 평가서 평가 	<p>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, 고시 ('13.1월, 4월)</p>

선정기준 의 공정성 제고	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삭제	경우 기술자평가서 평가 ○ 실적 및 경력 등 예시 제시	○ 예시 삭제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,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1)
	② PQ평가 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 도입 및 책임감리 원 역량평가 비중확대(2점→4점)	○ 심의절차 별도규정 없음 ○ 책임감리원 면접배점 (2점)	○ 관계자 의견수렴, 위원회 심의 후 일반 공개 ○ 책임감리원 면접배점(용역규모에 따라 2~4점) - 20억원미만 2점, 20억원이상~30억원 미만 3점, 30억원이상 4점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 전부개정	고시 (13.4월)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01)
16.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정립	①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감액 대상에서 제외	○ 별도 규정없음	○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 (13.1월)
	② 저가낙찰 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	○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원 추가 배치	○ 70%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 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- 낙찰율에 따라 총감리원 수의 20~50%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 보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81)

17. 건설공사 안전관리 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	① 안전 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작성 및 검토비용 사용과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고시 ('13.1월)
	② 발파, 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발파,굴착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사전 보강,보수,임시이전 등의 비용을 토목, 건축등의 관련 분야 설계기준으로 산출 및 집행 가능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(044-201-3577)
	③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리대책 비용	○ 별도 규정없음	○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의 우회예 따른 교통 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 마련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	
18.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설립	—	○ 조직위원회 신설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	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(' 12.12월) 2015물포럼준비기 획단 (02-502-8935)	
19. 2013년도 수자원전문대학원 개원	<신설>	○ 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자원전문대학원 설립·운영지원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일림마당>보도자료>국내최초, 글로벌 물 전문가 양성 위한 「수자원전문대학원」 설립	수자원전문대학원 설립 (' 13.3월)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(044-201-3592)	

20.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		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	행정도시건설특별법 (’13년)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복합도시과 (044-201-3689)
21.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채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(’13.1.1.) 	기업복합도시과 (044-201-3691)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(044-201-3691)
22. 기업도시 개발 채투자율 하향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도시 개발이익 채투자율은 최소 25퍼센트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도시 개발이익 채투자율을 12.5퍼센트P 하향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(’13.1.1.) 	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(044-201-3691)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(044-201-3691)
23. 새만금개발청 설립		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	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(’13.9.11)
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청 (044-201-3691)
24. 도시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으로 조성	① 공원 조성계획 에 범죄예방 계획 수립	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원조성계획에 토지이용, 동선, 공원시설배치와 더불어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	도시공원법 시행규칙 (’13.1월)
	② 범죄예방 일반기준 제시	〈신 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범죄예방 자연적 감시, 접근통제,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 	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51)

25.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	○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: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 소유자 1/2 동의	○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: ① 토지면적 2/3 소유, 토지소유자 1/2 동의, ② 공 원조성비 4/5 예치	도시공원법 시행규칙 (13.7월)
			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51)
26.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	○ 839억원 지원	○ 1,073억원으로 지원 확대 ☞ (참고)국토해양부홈페이지>국토해양뉴스> 보도자료>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크게 활성화 된다	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 (' 13. 1월)
			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(044-201-3743)
27.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	○ 행정관청 방문시 발급	○ 건물축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면 인터넷 발급 ☞ (참고)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홈페이지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(' 13. 1월)
			국토해양부녹색건축과 (044-201-3770)
28.건축 허가 기간 단축	① 건축심의 접수일 부터 1 개 월 내 의 무 적 개최	○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의 개최	건축법 시행령 (' 12.12.12)
	② 심의위원 명단 공개		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(044-201-3764)
	③ 과반수 찬성으		○ 회의는 구성위원(위원장과 위원장이 참여를 확정된 위원

	로 의결		을 말한다)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	
29. 도시미관을 창출하고,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	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	○ 전용·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 거리 이상 이격 1. 높이 4m 이하 부분 :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2. 높이 8m 이하 부분 :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3. 높이 8m 초과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1/2 이상	○ 전용·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 거리 이상 이격 1. <삭제> 2. 높이 9m 이하 부분 : 대지경계선에서 1.5m 이상 3. (현행과 같음)	건축법 시행령 ('12.12.12)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(044-201-3764)
30. 반쯤차량 판매시 반쯤차량 고지의무 신설		○ 고지의무 없음	○ 고지의무 신설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미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	자동차관리법 ('12.12.18.)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044-201-3843)
31. 차량 판매·정비·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		○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없음	○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신설 ☞ 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 > 정보미당 > 법령정보 > 자동차관리법상	자동차관리법 ('13.9.)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(044-201-3844)
32.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		<없음>	○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.5톤 이하 승합, 화물, 특수자동차에 의	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('13.1월)

		무 장착	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
33.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용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 자동차 ○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특수자동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중량 4.5톤 이상 승합자동차 →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 ○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특수자동차 	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(13.8월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34.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 강화	<없음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을 의무적용 	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(13.1월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(044-201-3851)
35.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	○ 전액 본인 부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수수료 감면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% 감면 	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지침 (13.1.1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	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(044-201-4602)
36. 항만개발 사업시행자 에게 국유지 임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지 매입 또는 5년이 내 단기 사용 허가 -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년(1회 연장)까지 국유지 임대 -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 치 허용 	항만법 (13.6월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 법령정보>항만법	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(044-201-4177)
37. 항만 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	① 인·허가 의제시점	○ 항만공사 시행 또는 허 가사실을 고시한 경우	○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한 경우
	② 관계기관 협의	○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 만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른 인·허가 사항 등의 의제	○ 관계행정기관이 협의요청에 대하여 20 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 된 것으로 간주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항만법	항만법 (13.6월)

		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- 20일 이내 의견 제시	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항만법	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(044-201-4145)
	③ 일괄 협의회 제도	-	○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항만법	
38. 국제 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	①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	○ 1천만원 이하 벌금	○ 200만원 이하 과태료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물류정책기본법 (12.12월)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(044-201-4003)
	② 변경등록 신고기간	○ 30일	○ 60일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③ 양도, 양수, 상속, 법인 합병, 휴업 신고기간	○ 15일	○ 30일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④ 휴업제한 기간	○ 6개월	○ 1년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	⑤ 폐업신고	○ 15일 이내에 신고	○ 폐지 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정책기본법	

39.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	-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 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○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 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○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○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	<p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'13.6월)</p> <p>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</p>
40.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	-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(네거티브) 방식으로 전환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	<p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'13.7월)</p> <p>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</p>
41.과징금·벌칙 병과 제도개선	-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과징금·벌금 병과 규정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에 대해 벌칙(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)을 삭제 <p>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p>	<p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'13.7월)</p> <p>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07)</p>
42.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	-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○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	<p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('13.1월)</p>

		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('13.1)	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(044-201-4011)
		☞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>법령 정보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	
43.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실제고제	<없음>	○ 직접운송의무비율제,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>법령 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(13.1월)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18)
44.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	○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,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,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 이상(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 이상)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 ○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(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만 해당한다)	○ 영업에 필요한 면적. 다만,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. ※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 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>법령 정보>화물자동차 운수사업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(13.1.1.) 국토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22)
45.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근거 마련	<없음>	○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·분류·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·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	국토부 물류산업과 (044-201-4017)

			<p>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</p> <p>※ 화물의 집화·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(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-808, 12.12.12. 제정)</p> <p>☞(참고)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</p>													
46. 헬기장 활주로 길이폭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A급</td> <td>B급</td> <td>C급</td> <td>D급 (또는 옥상헬기장)</td> </tr> <tr> <td>90M 이상</td> <td>90M 미만 40M 이상</td> <td>40M 미만 15M 이상</td> <td>항공기 기체 길이의 1.2배로서 최소 15M 이상</td> </tr> <tr> <td>30M 이상</td> <td>20M 이상</td> <td>15M 이상</td> <td>항공기 기체폭의 1.2배</td> </tr> </table>	A급	B급	C급	D급 (또는 옥상헬기장)	90M 이상	90M 미만 40M 이상	40M 미만 15M 이상	항공기 기체 길이의 1.2배로서 최소 15M 이상	30M 이상	20M 이상	15M 이상	항공기 기체폭의 1.2배	<p>○ 항공기 크기의 1.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</p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</p>	<p>항공법 시행규칙 (13.1월)</p> <p>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49)</p>
	A급	B급	C급	D급 (또는 옥상헬기장)												
90M 이상	90M 미만 40M 이상	40M 미만 15M 이상	항공기 기체 길이의 1.2배로서 최소 15M 이상													
30M 이상	20M 이상	15M 이상	항공기 기체폭의 1.2배													
47. 육상헬기장 갓길	<p>○ 활주로·유도로의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 갓길(Shoulder)을 설치할 의무화</p>	<p>○ 갓길 설치를 폐지</p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</p>	<p>항공법 시행규칙 (13.1월)</p> <p>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49)</p>													
48. 지진 분야 비상대처 계획 공항시설 물 지정 및 비상대처 계획 수립	① 지진분야 비상대처 계획 수립대상 공항시설 지정	○ 미지정	<p>○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 지정</p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자연재해대책법</p>	<p>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(13.1월)</p> <p>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50)</p>												
	②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 계획 수립	○ 미수립	<p>○ 지진으로 전국 15개 공항 여객터미널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지진위험 평가, 긴급대피, 비상운영계획, 긴급복구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</p>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</p>													

		정보>자연재해대책법	
49. 공항운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, 「한국공항공사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·이전받은 자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규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공법 시행규칙 ('13.2월)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(044-201-4355)
50.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(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은 100%, 이후 2년간은 50% 감면)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전면개정 ('13.3월)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(044-201-4377)
51.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('10년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적산소요구량 : 3.8mg/L 총인 : 0.074mg/L 오염물질 배출량('10년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적 산소요구량 : 7,761.7kg/일 총인 : 203.11kg/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 : 화학적 산소요구량(3.3mg/L), 총인(0.065mg/L) 오염물질 배출량('17년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적 산소요구량 : 7,241.3kg/일 총인(193.00kg/일) <p>☞ (참고) 국토해양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시화호 총량관리 시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화호 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('13.7월)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(044-201-4422)
52.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축소 (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)	<p><분 뇨> 제1호 가목</p> <p><분뇨오니> 제1호 다목1)</p> <p><음식물류 폐기물 폐수> 제1호 라목</p> <p>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</p> <p>-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('13.1월)

	<p>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</p> <p>-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·퇴비화시설 및 호기성(好氣性)·혐기성(嫌氣性)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)</p>		<p>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(044-201-4427)</p>
--	---	--	---

**2013년도부터
국토해양 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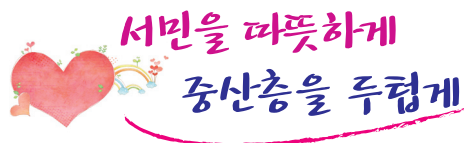
발행일 : 2012년 12월

발행처 : 세종특별자치부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

T. (044) 201-3081

F. (044) 201-5504

디자인·인쇄 : 크리커뮤니케이션 ☎ (02)2273-1775



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
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.

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



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- 인터넷신고**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) 부조리신고센터
- 주 소**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감찰팀
- 전화상담** TEL. 044-201-3123 FAX. 044-201-5506

※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.